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23호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지원 규모

- 2020년 : 629억원 내외 (미확정, * 2020년 예산 확정 후 지원)

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별첨 1]의 융·복합 지원모델 참조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지원의 설비(전력저장 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3. 지원 기준

□ 지원 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 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설비 설치비 산정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별첨 4] 참조)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
- 전력저장장치는 [별첨1]의 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여타 보조금에서 지원 시 동 사업에서는 지원 배제
- [별첨1]의 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융합)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서의 전력관리주체를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할 것
 - *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 도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시는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제안서)로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 [별첨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 개소별) 제출
 - *** 주관기관은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 신청전에 자체 사업공모과정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 (공개평가) 사업추진 방법 등 사업내용과 참여 시공기업 적정성 등 시공능력에 대하여 평가 ([별첨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참조)
 * 계량평가 40점과 비계량평가 60점으로 평가

○ 계량평가 기준

- * 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개평가표에 반영
-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기본평가 항목 : ① 시공능력(15점), ② 사업변경률(10점),
 ③ 민간자부담 비율(5점), ④ 예산 집행률(5점)
 ⑤ 사업비 정산현황(5점)

- 배점, 가·감점 적용 항목

- ①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이 일자리 우수기업(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고용 실적기준)일 경우, 배점(+2점) 부여
- ② “풍력, 소수력,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가 전체 신재생 에너지생산량의 20% 이상인 경우, 가점(+3점) 부여
- ③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가점(+3점) 부여(단, ‘20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 ④ [별첨1]의 ⑤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⑥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에 해당 하는 경우, 가점(+3점) 부여
- ⑤ BIPV를 포함한 사업신청 시, 가점(+3~5점) 부여(단, ‘20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 ⑥ 신청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일정비율이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 (최대 +3점) 부여
- ⑦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경우, 감점(최대 △3점) 처리

○ 비계량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5단계(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로 평가점수 부여

- (현장평가)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실 여부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확인·점검·조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 현장평가

- * 접수현황, 공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선정 및 협약 체결) 공개·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 '20년 정부예산 확정시 순위에 따라 지원
 - (사업 기간) 사업 낭해연도 내 사업 완료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 가능
 - (사업계획 변경)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 변경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은 지원예산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정부 보조금의 70% 이내), 설치설치 진행 또는 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

5. 사업 접수

6. 관리사항

-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모니터링업체 컨소시엄 포함) 원활한 REMS 연동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모니터링업체 포함 필수
 - 모니터링업체는 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여야 함
 - * REMS 사이트(rems.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 설정) 신청가능한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 설정
 - 개소당 신청가능한 태양광 최대 용량 100kW
- (시공기업 자격) 2019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 * '21년 융복합지원사업 공고 시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할 예정
-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하단우측 “KS인증” 메뉴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모니터링설비 포함)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 (사후관리)**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동 의무화**
 -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재생설비 관련 자기부담금 외 민간 추가비용부담 금지**
 -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신재생설비 설치비 외 없어야 함(단, 주민수익창출형 모델 제외)
- (지원 제외) 수송용 연료선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사업**

7. 기타 사항

-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52-920-0764,5)

- 별 침
1. 2020년도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2. 사업계획서 양식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4.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별첨 1 >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예시) 2014 충남아산 에꽃재 에너지자립마을 : 32가구에 태양광, 지열을 가구별로 설치하여 사용 중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2.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 (예시) 2015년 충남 죽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2015년 인천 지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3.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예시) 2017 대구 대크노폴리스 에너지자립타운 : 신업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여 구역내 에너지자립율 제고(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4. 모니터링 고도화

- (내용) '13~17년 융복합지원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모니터링 방식을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 (예시 1) 2013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은 자가 모니터링 ② 지열은 일부 자가모니터링(전력사용량 비계측)

☞ 2020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신청

① 공단 REMS 연동

* (예시 2) 2013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 등 웹모니터링

☞ 2020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신청

① 공단 REMS 연동

5.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를 통해 자립등급을 부여 받은 마을의 에너지자립율 향상을 위해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 * (예시) 1) 2010년 ○○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완료 (* 마을단위지원사업으로 추진)
2) 2012년 ○○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완료 (* 자체체, 자체기금, 업체지원 등으로 추진)
3) 2014년 ○○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완료 (*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추진)
 - ① 단일 에너지원만 설치했거나, 다중 에너원을 설치
 - ☞ 2020년 ○○군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자립율 고도화사업 신청
 - ① 태양광 미설치 가구에 추가 설치 ② 지열·태양열 설치로 에너지자립율 고도화

6. 주민수의 창출형 모델

- (내용)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하고 인근 마을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설비를 통해 전기·난방요금 절감
 - *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사항 없음)
 - * (예시) 2020년 ○○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농촌태양광 등과 연계한 주민수익 창출 사업)

7.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 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 (예시) 2015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계간축열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8.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및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별첨 2 > 사업계획서 양식

2020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작성자	소속		전화	
	성명		핸드폰	
	Fax		E-mail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input type="radio"/> 장소명 :		시(군·구)	리(동)
<input type="radio"/> 소재지 :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input type="radio"/>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분	호수 (개소)	용량 (kW, m ²)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합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			
	-			
설계비				
모니터링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계비		
모니터링비		
합 계		

8.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시설규모(용량 노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나. 사업수행 능력

- 자체 부담 사업비 재원 조달계획의 구체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다.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라. 사업추진 구체성

- 융·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마.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9. 융·복합 기대 효과

-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 나. 에너지이용 편의과 환경개선 효과 등

첨부서류 : [첨부서류1]사업내역,설비인증내역,계량점수항목,사업용량(총괄표)
[첨부서류2]계량평가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및기업신용도)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업은 미제출
[첨부서류3]융복합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개소별)
* 마을 대표, 지자체의 확약서 등 인정 불가. 사업추진개소 전체 각각의 확약서만 인정.
[첨부서류4]자체 사업공모 증빙자료(별도 양식 없음)
[첨부서류5]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 및 단가(별도 양식 없음)

< 별 첨 3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계 량 (40)	시공능력* (15)	'19년 참여기업	-	15	'19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15점) 부여
			기술인력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19년 비 참여기업	신규고용인력	2	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 고용 실적
			시공실적	6	최근 3년간 신재생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	3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사업 변경률 (10)	사업 변경률	10	2018년 사업변경 신청 비율	
	자부담 (5)	민간자부담 비율	5	민간자부담 비율	
	예산 집행률 (5)	예산 집행률	5	2019년 사업 보조금 교부비율	
	사업정산 (5)	사업비 정산현황	5	既추진사업 사업비 정산(반납) 미완료 사업수	
	가감점 (가점은 최대 10점)	에너지원 (가점)	(3)	풍력, 소수력,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비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점)	(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여부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주민수익창출형 (가점)	(3)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사업, 주민수익 창출형 사업과의 연관성	
		BIPV 포함 사업신청	(3)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1개소 포함	
			(5)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2개소 이상 포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점)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비율	
		규제현황(감점)	(0~ -3)	해당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현황	
비 계 량 (60)	사업추진 방법 (15)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절차	5	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5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10)	재원조달	5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의 구체성	
		지자체지원	5	사업계획 상 필요한 지자체 지원의 적정성	
	인프라 적정성 (12)	지역특성	4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민원, 인허가사항	4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인프라	4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사업추진 구체성 (13)	기술적 타당성 등	4	융·복합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공사·운영계획	4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계획	5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0)	사후관리	5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융·복합 기대효과	5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에너지이용 편의 및 환경개선효과 등	

총 점수 100

* 시공능력의 경우 설비 시공기업 점수에 각각의 참여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환산 평가

[1] 시공능력 (15점)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19 정부보급사업 참여시공기업 선정기준 준용

① 기술인력 배점기준 (4점)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중 1개 가입서류
-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력 보유 현황 (2점)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현황	배점		기타
		대양광	태양열	
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2.0	2.0	2.0
	② 6인	1.7	1.8	2.0
	③ 5인	1.3	1.7	1.8
	④ 4인	1.0	1.5	1.7
	⑤ 3인	0.7	1.0	1.5
	⑥ 2인	0.5	0.7	1.0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0	1.0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인력 근무경력 (2점)

구분	내용	배점	
		대양광	태양열
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2.0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1.7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1.3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1.0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0.7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0.8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0.7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0.5
	④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3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신규 고용인력 (2점)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1점, 청년 고용^{*}일 경우 1점(중복 인정 불가)
 - 신규 고용인력(산업기사, 기능사 무관) 배점의 합계는 **최대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18년 이후 신규 채용 및 공고일 이전 고용인원에 한하여 인정(4대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③ 시공실적 배점기준 (6점)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 가능 (설치확인서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 -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설치용량 (4점)

설치용량	설치면적	설치개소	증명	비율	내용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4.0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3.6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3.2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2.8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2.4

- 설치개소 (2점)

설치면적	설치면적	설치개소	증명	비율	내용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0이상	100이상	2.0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1.6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1.2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0.8

④ 기업신용도 배점기준 (3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 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내적
3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3.0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BB+, BB0, BB-	2.0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1.0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② 사업 변경률(10)

- 2018년 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변경 신청 비율 (총점 10점)

점수	4	6	8	10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 개소 대비 사업변경 신청 개소 비율 (%)	30초과	10초과 ~30이하	0초과 ~10이하	0

* '18년 융복합지원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 적용

③ 민간자부담 (5점)

- 총사업비 중 민간자부담 비율 (총점 5점)

점수	1	2	3	4	5
비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④ 예산 집행률 (5점)

* 2019년 사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와 컨소시엄 해당 광역의 보조금 교부비율 기준

○ 2019년 사업을 진행중인 컨소시엄

대점	0	0.5	1.0	1.5	2.0	2.5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보조금 교부비율 (%)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컨소시엄 해당 광역 보조금 교부비율 (%)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 컨소시엄 보조금 교부비율 : '19.6.14일까지 교부액 기준

** 광역단위 보조금 교부비율 : '19.6.14일까지 광역단위 교부액 기준

○ 신규 컨소시엄

대점	0	1.0	2.0	3.0	4.0	5.0
컨소시엄 해당 광역 보조금 교부비율 (%)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광역단위 보조금 교부비율만 적용

** 2019년 사업이 없는 광역에 해당하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만점 적용

⑤ 사업비 정산현황 (5점)

○ 既추진사업(~2018) 사업비 정산(반납) 미완료 사업수

대점	0	1	2	3	4	5
미정산 사업 (개)	5이상	4	3	2	1	0

* 기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19.6.14일까지 미정산(반납)된 기초지자체 사업 기준

** 기존 추진이력이 없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만점 적용

⑥ 가·감점

① 에너지원원 배점기준 (가점)

대점	0	1	2	3
가점	풍력 소수력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비율이 20% 이상			3
	그 외			0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가점)

구분	내용	비중
가점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단, 융복합지원사업 전체 신청 대상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3
	그 외	0

③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주민수익창출형 (가점)

구분	내용	비중
가점	공단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 대상지 고도화 or 주민수익창출형	3
	그 외	0

④ BIPV를 포함한 사업신청 (가점)

구분	내용	비중
감점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1개소 포함	3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2개소 이상 포함	5
	그 외	0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배점기준 (가점)

- 신청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일정비율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 취득 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구간>

비중	1	2	3
인증취득비율(%)	80이상~14미만	14이상~20미만	20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에 한해 가점실적 인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등급에 상관없이 가점실적 인정

*** '19.6.14까지 인증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현황 (감점)

구분	내용	도로/수지		
		0m ~ 100m 미만	100m 초과 ~ 200m 미만	200m 초과
%	없음	0	-0.5	-1
%	0m 초과 ~ 100m 미만	-0.5	-1	-1.5
%	100m 초과 ~ 200m 미만	-1	-1.5	-2
%	200m 초과	-15	-2	-2.5

< 별첨 4 >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1.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착수일 기준으로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함
2.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아래 대상지역에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 보급실)로 문의바람
3. 사업 추진 중(사업승인일자 이전)에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도서지역이 아님에도 가산지역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도서지역	구군	면동	대상지역
인천 광역시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삼산면	미법리, 서검리
	옹진군	서도면	말도리, 아차도리, 불음도리, 주문도리
		대청면	대청리, 대청1리, 대청2리, 대청3리, 대청4리, 대청5리, 대청6리, 대청7리, 소청리
		더적면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야리, 백아리, 울도리, 굴업리, 문갑리
		백령면	가을리, 연화리, 남포리, 북포리, 진촌리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자월면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삽시도리, 의연도리, 호도, 녹도 효자도리, 원산도리
		대산읍	웅도리(저도), 대죽리(먹어섬, 목섬)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리, 호리(쌍도)
		서천군	장항읍
경상북도	울릉군	근흥면	송림리(유부도, 대죽도) 가의도리, 용신리(문지섬), 도황리(형제섬), 신진도리(목개도, 죽도)
		북면	천부리, 나리, 혁포리
		서면	남양리, 남서리, 태하리
		울릉읍	도동리, 저동리, 사동리, 독도리

		읍면 풍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연도), 법송리(상도), 오륜리(읍도), 저산리(유자도), 수월리(장구도, 마장도, 소사도, 사도)	
		사량면	돈지리(수우도, 대섬, 농가도), 수우도, 양지리(잔도, 화도, 대호도),	
		신양읍	미남리(유도), 연화리(쑥섬, 대장두도, 소장두도), 삼덕리(소장군도), 풍화리(이끼섬, 동섬, 독섬), 콘리리, 추도리	
		옥지면	서산리, 동항리, 두미리, 연화리, 노대리	
		용남면	화삼리(밸섬), 삼화리(밤섬), 원평리(장도, 화동도, 동도), 장평리(해간도), 지도리, 어의리	
		한산면	두억리, 염호리, 창좌리, 하소리, 추봉리, 용호리, 비진리, 매죽리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연도리, 어청도리, 선유도리(계도, 닭섬), 무녀도리(장구도, 주삼섬, 앞삼섬, 박섬, 앞섬, 취동), 신시도리(진데섬), 애미도리(소야미도, 서도), 관리도리	
전라남도	여수시	목포시	달동	외달도, 달리도, 소두랑도, 별도
		삼산면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돌산읍	군내리(상중도, 하중도, 장구섬), 신복리(대소여), 울림리(밤섬), 죽포리(불무섬), 금봉리(소죽도, 금죽도, 취도, 까막섬, 서근도, 정개도), 평사리(경도, 조락섬)	
		남면	우학리, 심장리, 두모리, 유송리, 안도리, 연도리, 두라리, 횡간리	
		율촌면	봉전리(단도, 방끝)	
		화정면	월호리, 개도리, 제도리, 상화리, 하화리, 낭도리, 조발리, 적금리(만월도, 응도, 작은매섬, 상과도, 하과도, 머구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상송도, 하송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리, 소록리(소록화도), 시산리, 신촌리(대화도, 소화도)	
		금산면	어전리(형제도), 신전리(연홍도, 오동도), 신평리(계도), 오천리(대취도, 대취독섬, 소취도, 독도, 모녀도, 떡시리안섬, 떡시리바깥섬, 준도)	
		도화면	가화리(유리도), 덕중리(독섬, 추도, 추도안섬), 봉산리(소두방섬), 지죽리(죽도, 목도, 바구리섬, 대끌섬, 형제도, 유리도, 대염도, 소염도, 머구섬)	
		봉래면	예내리(대항도), 사양리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죽도, 요강도), 탄도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임병리, 송이리, 월촌리, 신기리, 영외리, 석만리, 죽도리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넙도, 원도, 초완도, 인도, 장고도, 해남도, 대개도, 소개도), 청용리(민대소도), 상정리(황도), 가교리(분도)	
		군외면	황진리(장군도) 토도리, 당인리(백일도, 흑일도, 동화도, 서화도) 불목리(고마도) 영풍리 (사후도)	
		금일읍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	

면리 목록		면리 목록	
		금당면	차우리, 가학리, 육산리
		노화읍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고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중통리, 부황리
		소안면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
		신지면	신리(치도), 동고리(혈도, 갈마도), 월양리(달해도, 내룡도, 진섬, 모황도)
		생일면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
		청산면	도청리,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홍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지리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가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송지면	어란리(어불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저도, 소저도, 작도도, 희어도)
		고군면	금제리(금호도)
		의신면	구자도리, 초사리(소삼도 중삼도, 대삼도, 무저도)
		조도면	관매도리, 관사도리, 가사도리, 나배도리, 놀육도리, 내병도리, 둥거차도리, 대마도리, 독거도리, 맹성리, 모도리, 맹끌도리, 서거차도리, 신육리, 소마도리, 성남도리, 여미리, 옥도리, 의병도리, 죽항도리, 진목도리, 청유리, 청등도리
신안군		장산면	공수리, 대리, 도창리, 다수리, 마진도리, 오음리, 팽진리
		압해읍	가동리(돌섬, 할미도, 대백도, 소백도, 정도, 뚱섬), 고이리, 가란리, 매화리, 복룡리(효지도), 송공리(역도), 신장리(용도)
		지도읍	감정리(볍고섬, 옛낭기섬, 윗장고섬), 당촌리(부남섬, 밖다리섬, 안다리섬, 단분계도), 봉리(솔섬, 소작도), 선도리, 어의리, 탄동리(소복기섬), 태천리(약조도), 율도, 큰쥐섬, 작은쥐섬, 동섬)
		증도면	병풍리, 병풍리 기점도, 소악도
		임자면	광산리, 대기리, 삼두리, 도찬리, 수도리, 이혹암리, 새원리, 진리
		암태면	기동리, 송곡리, 신석리, 오상리, 장고리, 단고리, 도창리, 수곡리, 와촌리, 당사도리 당사도, 초란도
		자은면	고장리, 송산리, 외기리, 한운리, 구영리, 연전리, 백산리, 장고리, 대율리, 유각리, 유천리, 진천리
		비금면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지리
		도초면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 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 만년리, 명당리, 이곡리, 발매리, 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돈목리, 우리도리 성춘리, 우이도리 동리도, 죽도, 우이도리 서리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번호
		장산면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유리, 마진도리, 팽진리 백야도,
		신의면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하의면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흑산면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상·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흥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
		우도면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